

창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648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64881 판결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소28250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11. 20

판결선 고 2020. 12. 11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 . 10. 17. 선고 2018가소28250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 99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는 2018. 5. 2.경 D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작한 철 구조물을 찾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4일 전부터 감금되어 있는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큰 일 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5. 8. C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9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99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동생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99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송금은 법률상 원인 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 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판사 강진명판사 이병호